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67-01

청렴사회협약 길잡이

TRANSPARENT SOCIETY PACT GUIDE

청렴사회협약 업무추진을 위한 길잡이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Contents

Ⅰ. 사회협약 개요

1. 사회협약이란?
2. 사회협약의 이론적 배경
3.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4. 한국의 사회협약 사례

Ⅱ. 청렴사회협약

1. 청렴사회협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청렴사회협약이란?
3. 청렴사회협약의 원칙
4. 청렴사회협약의 구성요소

Ⅲ.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1.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단계
2. 청렴사회협약 추진단계별 주안점
3.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4. 협약문의 구성

Ⅳ. 협약의 다양한 추진 사례

1. 분야별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2.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3. 청렴사회협약 사례 및 협약문 예시

Ⅰ. 사회협약 개요

1. 사회협약이란?
2. 사회협약의 이론적 배경
3.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4. 한국의 사회협약 사례

1. 사회협약 이란?

일반적인 사회협약이란,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협의모형

1 **사회문제**

- 실업, 고용, 노사갈등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회문제
- 사회문제에 적대적 대립

2 **공통 이해관계**

- 노사정 등 사회문제에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집단들이 경쟁과 대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공유
- 경제위기 극복, 노사공존, 등 공동체사회의 공존번영을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 발굴

3 **사회협약**

- 당면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율적 조정방식으로써의 사회협약
-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립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

4 **협약이행 · 사회문제해결**

-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회협약의 이행으로 당면한 중대 사회문제 해결

청렴사회협약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시민사회, 경제계, 정치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약속

1 부패문제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뇌물, 횡령, 입찰비리, 채용비리 등 행정부패
- 지역토착비리, 건축비리, 사학비리, 기업비리 등 민간부패
-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와 사법농단 등 사법부패
- 부패로 인한 신뢰붕괴

2 공통 이해관계

- 부패로 인한 국제경쟁력 하락, 부패문제 해결없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공유
- 정부의 부패통제만으로는 부패문제 해결이 어렵다는인식과 공통의 이해관계 발굴

3 청렴사회협약

- 협약 당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조정방식으로써의 청렴사회협약
- 대립적 당사자가 갈등을 조정하고 반부패 · 청렴을 약속하는 협력체

4 협약이행 · 청렴한국건설

-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반부패 · 청렴 실천 의제를 이행하여 청렴한국 건설

1. 사회협약 이란?

사회협약(Social pact)이란?

- 사회협약은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조합주의적 정책협의 모형
- 현대사회에서 정부역할은 전통적인 계급갈등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갈등을 통합하고 조정, 관리하는 것으로 확장됨. 이러한 갈등 조정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과 정부주도 중립적 정책결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지며 사회협약 등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 문제해결 기제가 발달하게 됨
- 이익집단의 범주를 넘어 공공정책 결정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게 됨
- **사회협약의 유래**
  - 유럽국가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노사단체가 시도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사회협약의 유래임
  - 북유럽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 전통적 사회협약이 형성되었고, 대표적인 전통적 사회협약으로 스웨덴의 1938년 살쯔요바덴 협약은 대공황 여파로 발생한 사회갈등을 국가개입과 자발적 노사협력으로 해결한 점이 특징
  - 이후 1960년대 서유럽에서 보편화되었고 1970년대 경기침체와 1980년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새로운 형태로 발달함
  - 1990년대 신자유주의 변화속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협약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공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
  - 과거의 전통적 노사정 협약이 적대적 경쟁의 정치적 교환체계(하향식 적대적 거버넌스 Fung & Wright, 2003)라면, 새로운 사회협약 모델은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비판적 협력체계(김석준, 2002)

- **사회협약 유사 개념**
  - 사회적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집합행위의 상호교환 개념으로 보고 사회협약을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에 포괄하기도 하나 구별하는 추세

- **사회협약의 다양한 정의**
  - 유연한 사회적 합의모델(조형제, 2005)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제도화된 동의 또는 합의(정상호, 2007)
  - 조직된 사회적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집합행위의 상호교환(강명세, 2006)
  - 노사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조직화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당면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율적 조정방식(정상호, 2007)
  - 상이한 사회계급간 조정과 협력의 구축인 경쟁적 조합주의(Rhode, 2001)
  - 신조합주의적 정책협의 수정모형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 정책공동체에 해당(라영재, 2008)

거버넌스와 사회협약

- **정부 역할의 변화와 뉴 거버넌스**
  -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의 변화 속에 정부 역할은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갈등을 통합하고 조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계층제적 국정관리 체계에서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로 변화함
  - 정부중심의 수직적 거번먼트(government)에서 수평적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화되고,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주체간 조정 메카니즘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부각됨(Peters, 2000)
- **거버넌스의 정의**
  -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에 기초하여 발전된 개념으로써 학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공통적으로 효율성, 책임성, 민주주의, 분권화, 자율화 등이 핵심가치
  - 정책 결정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Pierre & Peters, 2000)
  -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을 위한 제도(이명석, 2002)
  -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최광의), 국가단위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력으로 국가주도인 신공공관리,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광의), 거버넌스는 뉴 거버넌스로 불리며 네트워크가 주요 특징(협의 의미)(이명석, 2002)
- **거버넌스와 사회협약과의 관계**
  - 사회협약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을 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문제해결 도구임

사회협약의 성립요건

- **사회협약 구성 원리**

  - 사회협약은 정책협의의 기제로 보는지, 문제해결의 기제로 보는지에 따라 협약을 구성하는 원리와 요건이 달라짐

- **사회협약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요인**

  - 사회협약을 정책협의 기제로 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제시 (라영재, 2008)
  - 행위자, 기능, 구조, 제도화, 상호작용의 관행, 권력배분, 행정전략의 변수에 따라 성립요건을 세분화(Schubert와 Jordan, 1992)

<사회협약 분석 요인>

요인1	중대한 사회문제(위기적 요소)
요인2	공동의 이해관계
요인3	정부의 태도
요인4	정당의 참여
요인5	이행능력의 담보(참여자 대표성)
요인6	이행 여부

라영재(2008)

  - 정책행위자, 행위자간 상호관계구조와 상호작용, 정책 산출의 변수(김순양, 2003)

- **사회협약 성립요건**

① 사회협약 공통의 이해(이슈, 의제)가 필요(청렴사회협약의 경우는 부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유가 전제)

② 공유된 문제의식이 일방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제, 즉 심각한 이행문제가 존재해야 함. 이러한 이행문제가 바로 협약의 필요성

③ 사회협약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회협약 참여 핵심대상과 일반 참여대상, 지원집단 등이 필요

☞ 즉 사회협약의 성립요건은 중대한 사회문제,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능력과 공동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성됨

3.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사회협약에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협약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사회협약의 전통적 모형인 스웨덴의 사회협약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등 1990년대 전후 등장한 사회협약 검토
-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던 노사정 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대책사회협약, 투명사회협약의 사례 검토

스웨덴 사회협약

[개요]

- 스웨덴 사회협약은 전통적인 사회협약의 대표적 모델로 1938년 살쯔요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으로 대표되며, 80년대 초반 임금생활자 기금 문제 갈등으로 사실상 붕괴될 때 까지 40년 이상 지속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요체
- 이념적 기초 : 통합, 연대, 평등
- 살쯔요바덴 협약 이후 일련의 사회협약과정을 통해 자발적 노사합의를 통한 산업평화의 실현, 조세 및 사회정책을 통한 광범위한 국가개입,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함

[배경과 전개과정]

-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총연맹(LO, 1898년 결성), 스웨덴사용자연맹(SAF, 1902년 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1879년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대규모 파업 등 노사대립이 지속되었고,1906년 LO와 SAF는 12월 협약이라 불리는 최초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노사갈등 지속됨
- 보수주의정부는 불개입을 일관하며, 국가실업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에 소극적 개입
- 1929년 대공황으로 스웨덴의 실업률은 31년 16.8%, 32년 22.4%, 33년 23.3%을 기록
- 1932년 사민당정부의 등장으로 노사정간의 산업평화협상이 36년부터 시작되었고, 2년여 간의 협상 결과 1938년에 살쯔요바덴 협약 체결

[스웨덴 사회협약의 특징]

- 산업평화문제는 노사간의 자발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한 상징적인 협약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함
- 69개의 노동조직이 모여 결성된 스웨덴 사민당(1889년 결성)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노동조직인 LO와의 협력이 가능했고, 농민당과의 적록동맹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갖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가능
- 50년대 말까지 계속된 적록동맹이 해소된 이후에도 화이트 칼라층과의 동맹으로 전환, 완전고용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이 지속되어 전후 변화된 정세속에서도 협약 유지됨

[스웨덴 사회협약의 성공요건]

- 첫째 권력 균등에 있음. 노동조합총연맹과 스웨덴사용연맹의 중앙집권성과 조직의 폭이 넓어 이를 조정하는 정부가 양보와 타협을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둘째, 행위자들 간의 신뢰성과 책임성임. 사회협약의 구성원들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었음.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전통, 질서 존중 등 스웨덴의 사회문화가 협약 지속의 영향을 미침(김순양, 1999)

<사회협약의 성공요건에 관한 분석틀>

변수	하위지표	
사회문화적 요건	대화와 타협의 전통/ 사회전체적 질서 존중/ 위기의식의 공유	
경제적 요건	수출지향형 개방경제체제/ 경제적 위기상황의 존재	
정치적 요건	계급정당의 존재/ 노동 이익의 정치적 대표	
행위자 요건	국가	개입주의적이고 중립적인 국가/ 사회집단의 수용
	노사단체	위계적 조직/ 이익대표 및 성원규제 능력/ 정책능력
행위규칙 요건	행위자들간의 신뢰성/ 책임성/ 권력균등성/ 호혜성	

김순양(1999)

3.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네덜란드 사회협약

[개요]

- 1982년 말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ccord) 체결, 폴더모델(Polder model)이라 불림
- 폴더모델은 사회적 협의기구와 노사합의기구를 기반으로 함

[배경과 전개과정]

- 1979년 오일쇼크 충격으로 81-82년 마이너스 성장, 10% 후반대의 실업률, 심각한 노사갈등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 직면
-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실업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기업 이윤 증가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이해에 따라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
- 1983~93년 동안 경제·사회정책의 목표, 방법 및 제약들을 논의하면서 일련의 협약 체결
- 성공적 협약은 2004년 조기퇴직, 생애 휴가계획, 실업보험금의 절약 등에 관한 사회협약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특징]

- 사회경제협의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 : SER)와 노동재단(The Labour Foundation) 두 기구를 중심으로 사회협약이 진행됨
- 노동재단은 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반면, 사회경제협의회는 산업조직법에 의해 노·사·공익의 3자로 구성된 의회와 정부에 대한 자문기구
- 사회경제협의회의 공익위원은 노·사·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나 정부에 대한 책임이 없음. 공익위원이 정당간 균형을 가능하게 함
- 사회경제협의회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공동의 정책비전을 연구하고 , 사회·경제 쟁점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회에 권위 있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
- 네덜란드의 사회협약은 노동재단의 노사간 고용 및 임금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정부의 정책선언문의 형태로 체결되며, 노사정간 이견이 없을 경우 사회경제협의회 협의 →노동재단 합의 → 정부선언의 과정을 거침

브라질 사회협약

[개요]

- 2003년 집권한 룰라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브라질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추진됨
-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유럽의 방식과 다르게 군부독재 정치투쟁 등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여 국가적 합의를 도출함

[배경과 전개과정]

- 브라질은 단일 노조만 허용함으로써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체제 일부로 삼는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이 3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 사회협약은 군부독재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가짐
- 1985년 민주화 이후 전통적 노동체제 운영방식이 변화됨. 노동부의 직접개입이 없어지고 수평조직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노사간 자율적 협상이 진전되는 형태로 발전
- 1992년부터 노사정 협의기구 운영 등의 시도가 있었고, 2002년 룰라 집권과 함께 사회적 합의모델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됨
- 2003년 1월 1일 임시조치 103호를 발하여 대표적인 사회협약 기구로 경제사회발전협의회(CDES)와 경제사회발전협의회특별사무국(SEDES)을 설치
- 2006년 이후 룰라정권의 부패스캔들 등으로 사회협약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규범화에 실패

[브라질 사회협약의 특징]

- **[목표]** 사회협약기구인 경제사회발전협의회(CDES) 목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화를 통해 브라질 경제사회 발전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절차상의 합의를 촉진함
- **[전략]** 신자유주의 ,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정체라는 정세에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세수를 확대하며 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마련
- **[주요특징]** 노동자당 정부가 주도하는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의제와 방식. 국가가 주도하지만 매우 중층적이고 비공식적 구조를 포함함. 유럽과 달리 공식적인 조인과 같은 이벤트보다는 의제를 둘러싼 노사정 주체의 토의와 동원 과정을 중시하였고, 개별적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발전과 개발에 관한 가능한 모든 범위 허용

3.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아일랜드 사회협약

[개요]

- 아일랜드 정부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협약(social pacts)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합의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옴
- 국가경제사회발전처법(2002년)에 근거한 국가경제사회발전처(NESDO)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회협약의 제도화와 공식화 수준이 높음

[배경과 전개과정]

- 아일랜드는 1975~80년간 3.7% 로 경제성장했으나 80~85년간 평균 0.1% 씩 하락. 실업률은 80년 7.3%에서 85년 17.3%로, 공공부채는 81~85년GDP의 94%에서 134%로 급증
- 아일랜드의 노사 행위자들은 대부분 기업 단위로 분열되어 노사간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음
- 노조가 다양한 업종, 부문(국내기업/다국적 기업), 국적별로 구분되어 노동조합도 적대적 노사관계를 가진 전통적 기업군과 비노조화 방향으로 가던 기술집약산업 부문의 외국인 소유 기업군으로 구분되어 통제가 어려워 급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형성됨
- 1987년 말 정부, 노조단체, 사용자 연합은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소득세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재건 협약(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체결
- 협약 초기 정부는 협약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사용자측은 국가 경제발전이 기업 성장보다 우선시되는 1970년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했고, 노조 역시 개별 협상이 협약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차가 있어 협약이 어렵게 진행됨
- 협약 이행에 부정적인 여건에서도 18년 이상 협약이 지속되었는데, 초기는 소득 총액 절대 가치에 집중하였고 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하여 협약의 범위가 경제에서 정부가 관장하는 모든 정책 영역으로 확대되어 협약이행 성공
- 협약 이행을 책임질 수 없는 구성원간에 이루어진 협약이었으나 협약의 이행은 성공
- 2002년 경제사회발전처법안에 따라 국가경제사회발전처(NESDO) 신설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협약이 국가경제사회발전 전략적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

[아일랜드 사회협약 기구(국가경제사회발전처)의 특징]

- 노사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거시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를 포괄함
- 아일랜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연합과의 협상 틀을 넘어서 동반관계로 확대(지역사회 NGO 대표들이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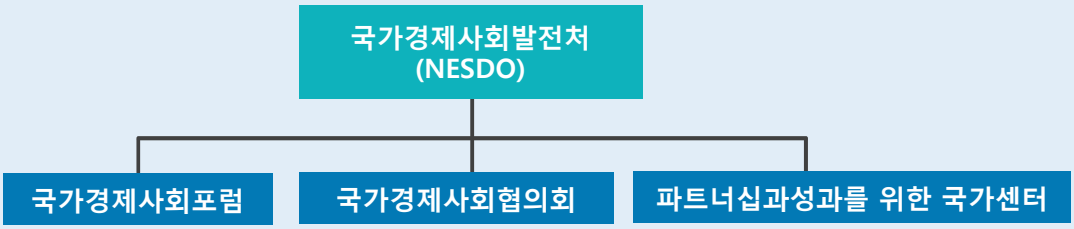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특징 및 시사점]

-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던 아일랜드 노조의 온건파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성공요인
- 사용자는 임금억제라는 조건에 신뢰를 보여주기 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신뢰를 한 이후에는 전향적으로 협약에 동참
- 사회적 동반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협의, 협상, 이행, 이행점검, 그리고 환류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독립적 이행점검 기구 존재)
- 1980년대 중반 거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내부의 합의를 가능케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제도를 갖추고 있음
- 반면, 사회협약이 포함하는 의제의 범위가 넓어 인적 물적 부담이 큰 점, 하부수준 파트너십 미형성으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한 점, 아일랜드의 산업화가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게 하는 기제가 된 점 등의 비판이 있음
- 분산된 협약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성공요인임을 시사함

한국의 노사정 협약

[한국 노사정 위원회 초기 추진 개요]

- 1997년 11월 정부의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 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노사정 협의회의 구성과 참여 요청
- 1998년 1월 노사정협의회 출범
- 1998년 2월 6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 을 체결
- 2004년 2월에는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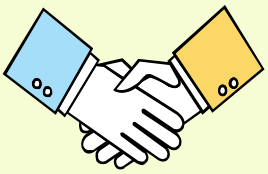

[한국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협약의 체결 과정]

- 한국 노사정 위원회의 협약은 전통적인 조합주의에 의한 정책협의
- 사용자는 노사정위원회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 범위 최소화 시도, 경제위기를 벗어나며 노사정위원회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어함
-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노조원의 40%에 불과 했지만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했고, 민주노총도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개혁을 기대하며 참여하였으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특히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체결 3일 만에 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 특별회의에서 수용이 거부되기도 함
-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지만 노사정 협의회를 탈퇴하지는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민주노총의 태도는 대기업 노조에 의해 좌우됨
-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를 합의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고 민주노총의 오랜 숙원인 재벌 개혁보다는 회사 단위의 고용안정과 사내복지에 집중하게 됨
- 정부는 노사정 협의회의 사회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협의에 성공했고, 사용자는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작은 반발로 정리해고 합법화를 이루어 냈고 노동자는 경제위기와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대기업 노조의 고용안정과 사내복지 향상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협약

- 2005년 10월 정기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 국가경쟁력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여 구성
-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선택
- 2006년 6월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경제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대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 을 체결함
- 정부위원 9명, 노동계 6명, 경제계 6명, 시민단체 4명, 종교계 3명, 농어민·여성·학계·사회원로 각 2명 등 모두 3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은 국무총리와 재경·교육·복지·노동·여성·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
- 경제, 노동, 시민단체는 별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실시
-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2차 의제로 국민연금개혁방안 추진이었으나 합의 되지 않음
-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3차 의제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로 연석회의 결과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
-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3차례 협약추진은 협약 이후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아 선언적 협약에 그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저출산 고령화 협약은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평가

4. 한국의 사회협약 사례

투명사회협약

- 부패가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공동의 약속과 노력을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2004년 제안, 정부, 경제계, 정치권,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추진
- 2005년 3월 9일 정부, 재계, 정치, 시민사회 4대 부문이 모여 대표인사 38명이 서명함으로써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고,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실무 기구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4대 부문 중 정부와 경제계의 분담금으로 운영됨
- 투명사회협약은 정부 주도 거버넌트 방식의 부패통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거버넌스
-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가 맺은 상호주의적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스스로 부과한 책임을 지고 제재를 감수하는 거버넌스임
- 투명사회협약은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으로써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됨

부문	투명사회협약의 내용
공공부문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정치부문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직무관련 주식 및 부동산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 도입 불법조성수수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등
경제부문	윤리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 내부거래 차단 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등
시민사회부문	투명사회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의 제정과 실천 투명성 교육강화 시민참여 촉진 등

[투명사회협약의 목표]

- 부패한 과거와 단절 /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기반 확대 /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제고 / 투명사회의 법제도적 정비 / 지역투명성의 개선 및 제도화 / 사회의 수평적 연대 제시

[투명사회협약의 성과]

- 부패문제의 이해관계자인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가 모두 협약에 참여
-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수평적 협력을 추구하였으며 지역으로까지 확산과 심화를 추구
- 이행 평가를 하고 결과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표하여 국민과 공유하려고 시도함
- 국제사회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음

[투명사회협약 현황]

구분	본 협약	개별 협약
명 칭	투명사회협약 ('05.3)	건설('05.4), 공기업('05.6), 보건의료('05.9), 금융('05.9), 교육('06.5), 사회복지('06.10), 산림('07.8)
		부산('05.6), 경남('05.8), 대구('05.9), 충남('05.10), 안산('06.11), 인천('07.1), 울산('07.2), 경기('07.6)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 협약('07.3)
의 제	공공 · 정치 · 경제 · 시민사회 및 이행점검 총 35조, 64개 과제	본 협약 체계 수용
참여자	정부, 경제, 정치, 시민단체	지방정부, 경제, 의회, 시민단체 및 분야 관련 공공기관, 협회, 단체 참여
이행기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사단법인)	개별 실천협의회 구성
이행방안	참여주체가 실천계획 마련 및 실천협의회 점검	본 협약과 유사(협의회 구성과 이행점검 미흡)
예산지원	경제(50%), 정부(25%), 정치(25%)	참여단체가 예산 지원(지자체, 주관기관이 주로 분담)

라영재(2008)

4. 한국의 사회협약 사례

[투명사회협약의 파기]

- 2008년 투명사회협약의 공공부문 대표 당사자인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되고 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중단
- 2008년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 2008년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정부예산 국회 제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최종 정부원안(삭감)으로 처리
- 2009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 폐쇄
-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소규모 반부패민관협력 조직으로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2009~2012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2014년~) 형태로 변화

[투명사회협약의 한계]

- 실질적인 협치와 협력에 미숙
-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부족
-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소통수단 미흡
- 효과적인 의견수렴 부족으로 사회적 부패이슈에 침묵
- 중앙위주의 하향식 접근
-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 강제력 미흡
- 협약참여자의 부패행위 발생 시 대응방안 부재
- 정부정책과의 연계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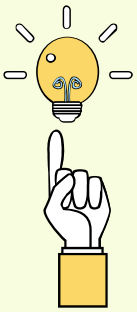

[투명사회협약의 시사점]

- 사회협약 체결이 중심이 아니라 협약의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
- 정부의 의지로 중앙 협약을 체결한 후 하향식 협약을 체결한 방식으로써 우리 사회 성격상 하향식 협약 추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정권이나 주요 참여자의 의지에 따라 붕괴되어온 2008~9년 협약의 파기과정을 살펴보면, 하향식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사회협약에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분권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회에 맞는 추진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과정이 필요하며 핵심 추진집단의 실행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함
- 또한 핵심집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준비되어야 하고, 공통된 이해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협약 이슈의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실행력이 받쳐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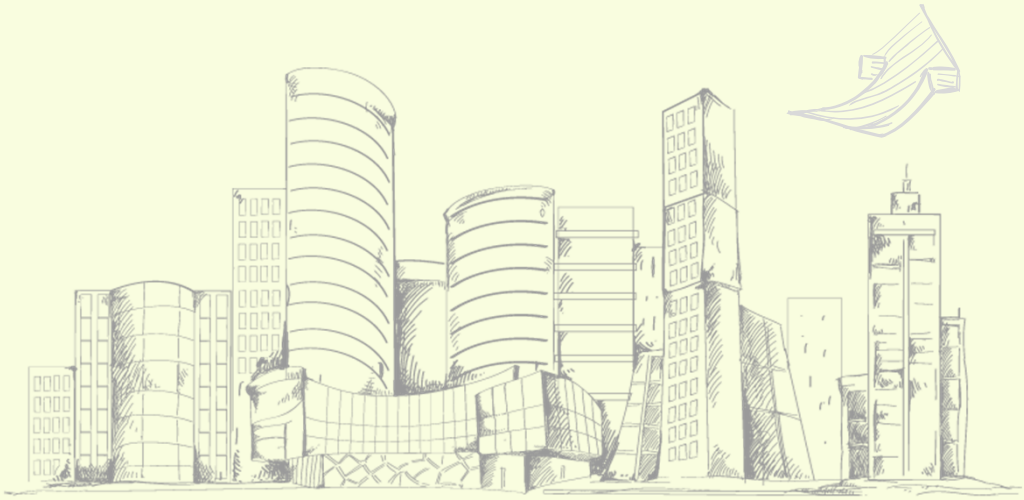

memo

Ⅱ. 청렴사회협약

1. 청렴사회협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청렴사회협약이란?
3. 청렴사회협약의 원칙
4. 청렴사회협약의 구성요소

1. 청렴사회협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배경

- **국제 환경과 한국의 청렴 수준**
  - ➢ 국제사회에서 부패는 '신뢰성 위기' 혹은 '신뢰 적자'로 표현되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불가능
  - ➢ 반부패·청렴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국가차원의 관리와 노력 필요
  - ➢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경제규모(GDP 세계 11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CPI 세계 51위)
  - ➢ 특히 '02년부터 지속 상승세였던 청렴수준은 '08년을 기점으로 답보상태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노력 필요

-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청렴**
  - ➢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 중 1위는 '부패비리청산'(30%)이라 응답
  - ➢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부정부패 척결 : 국민의 20.4%가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선택
  - ➢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반부패·청렴 정책기조를 강화

- **새정부 반부패 추진 전략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 2017.7.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종합적 반부패대책 수립 반영
  - ➢ 2018.3. 시민사회·경제·언론·학계 등 각계 대표 30인으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 ➢ 2018.4. 민관이 함께하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 ➢ 주요과제 중 하나로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 단위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 · 확산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 그 동안 정부는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기구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부패통제 제도 도입과 정책적 시도를 함
  - 이렇게 정부주도의 제도적 부패통제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부패는 단일처방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 부패통제는 크게 사후 통제적 방식과 사전 예방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후적 부패통제인 적발, 처벌의 방법과 사전적 부패통제인 청렴교육, 사회문화 조성 등의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
  -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해져 정부주도의 부패통제보다는 민간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버넌스적 방법에 의한 반부패 ·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기구 설립 전후로 다양한 부패방지 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예방과 통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러 대형 부패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부패문제는 공공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민·관·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극복 해 나가야 함

-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전략, 청렴사회협약**

  - 반부패 청렴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 [반부패·청렴 사회협약]을 통해 민·관·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 필요

2. 청렴사회협약이란?

청렴사회협약이란?

- 공동의 사회문제인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경제계, 정치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약속

청렴사회협약의 목적

- 청렴사회협약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반부패·청렴'의 명확한 중심 목적을 가짐
- 다만 , 해당 분야 · 부문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반부패·청렴 달성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구체화 될 수 있음

청렴사회협약의 주체

- 청렴사회협약의 주체는 정부, 시민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과 청렴사회협약의 형태(부문, 분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주체가 될 수 있음
- 청렴사회협약의 실질적 이행력 담보를 위해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핵심집단이 먼저 주체로 구성되고 점차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렴사회협약 추진방향

- 청렴사회협약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주체가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 청렴사회협약 추진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연대와 협력, 소통과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민주적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다수결의 원리를 넘어서는 협약 구성원의 하부단위까지 충분한 토론과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민주성을 의미함
- 협약 참여 대표자만의 합의가 아닌 각 조직의 구성원까지의 합의가 중요함
-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인식공유, 참여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나 단체의 최고의사결정단위의 의지가 매우 중요
- 청렴사회협약은 참여 주체들이 반부패 · 청렴과제를 약속하고, 이행하고, 보고하는 실천이 중요

청렴사회협약의 다양한 형태

- 청렴사회협약은 협약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 청렴사회협약,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할 수도 있음

3. 청렴사회협약의 원칙

청렴사회협약의 5대 원칙

01
consensus forming
공감대 형성

02
horizontal network
수평적 네트워크

03
voluntariness
자발성

04
positive approach
긍정적 접근방법

05
act by consent
동의에 의한 실천

01
consensus forming

공감대 형성

- 청렴사회협약의 첫 번째 원칙은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과 추진에 대한 협약 참여자 들의 공감대 형성 중요
-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로서 공통의 반부패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공유가 핵심원칙으로, 협약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협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02
horizontal network

수평적 네트워크

- 둘째 원칙은 협약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동등한 자격이란 단순한 1인1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협상의 과정에 각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과에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함

03
voluntariness

자발성

- 셋째 원칙은 협약의 추진과 이행의 전 과정이 협약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함
- 이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협약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정부의 압력이나 규제의 방식을 경계하고 협약 참가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독려해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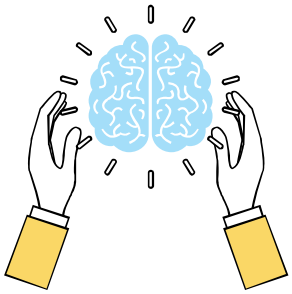

04

positive approach

긍정적 접근방법

- 넷 째 원칙인 긍정적 접근방법이란 긍정적 동기부여를 통해 공통의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 즉 부정적 동기부여인 처벌, 벌금 등의 벌칙이 아니라 인센티브, 격려, 인정 등의 긍정적 동기부여 방법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

05

act by consent

동의에 의한 실천

- 마지막으로 동의에 의한 실천이란, 협약의 실천의제는 협약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구성됨을 의미
- 사회협약은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성집단의 자발적 실천을 구속할 수 있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4. 청렴사회협약의 구성요소

청렴사회협약의 구성 6요소

foctor 01
협약 당사자와 핵심그룹

foctor 02
공동의 목표

foctor 03
협약 실무협의 기구

foctor 06
이행평가와 확산

foctor 05
협약문

foctor 04
실천의제

4. 청렴사회협약의 구성요소

첫째

협약 당사자와 핵심그룹

- **[협약 당사자]** 협약에 참여하는 공공부문(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경제부문(기업, 직능협회 등), 시민사회(NGO,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 등에서 각각 주체로 참여
- **[핵심그룹]** 협약의 초기 구성단계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여 협약의 주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협약 당사자 중 핵심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향후 협약 주체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의 핵심으로 구성된 핵심그룹 형성을 통해 협약추진 가능

둘째

공동의 목표

- 협약이란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므로 공동의 목표가 협약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 공동의 목표는 협약추진의 출발에서부터 토론하고 협의하며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약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요소
-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한 동의의 과정을 거쳐 설정

셋째

협약 실무협의 기구

- 협약 당사자와 핵심그룹이 형성되고 공동의 목표가 마련되면, 협약의 실질적 추진과 실천의제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가 필요함
- 실무협의 기구는 협약의 결속수준과 여건에 맞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가능한 정기적 협의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성원과 운영원칙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협의 기구는 규칙이나 조례 등 법적 효력을 갖추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실천의제

- 실천의제는 반부패·청렴 이행과제로써 협약 참가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의미하며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될수 없고 모든 협약 참여 당사자가 동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핵심
-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가 되는 과제를 실천의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협약문의 핵심내용임

다섯째

협약문

- 협약은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공유되어야 하므로, 협약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는 협약문의 마련이 중요함
- 협약문은 협약의 목표, 협약 당사자, 협약의 실천의제, 실천의제의 이행평가, 협약 운영을 위한 규정, 협약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등 협약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협약문은 협약체결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서명과 실천약속으로 발효

여섯째

이행평가와 확산

- 협약은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협약 구성원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핵심. 따라서 협약의 목표와 실천의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
- 이행평가는 연간평가 등 정기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개선방안 마련, 실천의제의 개선과 심화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함
- 협약의 유지, 확산·발전을 위해 공동 목표와 실천의제의 이행수준과 결과를 점검하는 협약 이행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평가 방법은 여건에 따라 내부 상호평가(peer review) 및 외부전문가평가 등을 고려해 실시

Ⅲ.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1.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단계
2. 청렴사회협약 추진단계별 주안점
3.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4. 협약문의 구성

1.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단계

1 핵심그룹

청렴사회협약 체결준비

핵심그룹 구축
자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2 공동목표

공동목표 토론과 합의

사회협약 필요성에 대한 공유
협약구성원 간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

3 협의기구

협약실천을 위한 조직

사회협약체결과 이행과제 실행을 위한
책임조직과 실무조직 구성
사회협약체결식 준비위원회 구성

4 실천의제

청렴사회협약 실천의제 합의

협약 실천의제에 대한 합의 / 확정
세부 이행과제 토론

5 협약체결

청렴사회협약 체결

사회협약 체결식
협약문과 이행과제, 실무조직 규정 등

6 이행평가

청렴사회협약 이행과 평가

이행과제의 실천과 평가
사회협약 확산

청렴사회협약 추진 세부 단계

	세부 단계	주요 내용
1	필요성 인식과 환경조성	• 협약의 필요성 인식과 실효성 파악 •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 환경조성 • 이해 관계자들의 간담회, 공청회 등 협약 환경의 조성 • 대중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 구성원에 대한 여론조사
	핵심그룹 구축	• 협약의 이해당사자들의 핵심으로 구성된 핵심그룹 형성 • 협약 추진과정의 합의와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
2	공동목표 설정과 네트워크 구축	• 각 세력들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상을 통해 합의 형식으로 의제 설정 • 대중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 구성원에 대한 의견 반영 • 해당 협약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3	실무 협의기구 구성	• 구체적인 협약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실무 협의기구 구성 • 토론회, 간담회 등 공동목표와 실천의제를 탐색할 수 있는 가벼운 형식의 활동에서 출발하여, 관련기관 연락본부, 협의체, 실무단 등 실무협의기구 구성으로 발전 • 협약 추진의 실무를 담보할 실무 협의기구의 정기성, 권한, 책임 등 마련
4	의제 공론화와 실천의제 설정	• 해당 부문이나 조직의 피드백과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의견수렴 • 공론화를 통한 실천의제 논의 • 협약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동 실천의제 마련
5	협약문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의 실질적 내용인 협약문 작성 • 협약문은 협약의 목표, 이해 당사자, 실천의제, 이행평가, 협약 운영을 위한 규정, 협약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등 협약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 • 이해당사자 대표들 간의 협약문 서명과 협약 체결 • 협약 조인식 등 행사구성을 통한 효과 고려
6	협약 이행	• 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협의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협약 이행을 책임지고 운영 • 정기성, 책임성, 안정성을 위해 운영규칙과 재정 보장필요
	협약 이행평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 협약 당사자들 간의 교차평가나 동료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 협약 여건에 맞는 이행평가 가능 • 이행평가 대국민 보고대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협약의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홍보하고 협약 환산의 토대 마련
	협약 확산	• 협약의 추진과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협약의 참여 당사자 확산을 고려(홍보, 참여독려, 여론 반영 등) • 각 부문이나 조직의 하부 단위까지 협약 확산 • 실효성 높이기 위해 협약 실천의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구체적 실천 방안 필요

2. 청렴사회협약 추진단계별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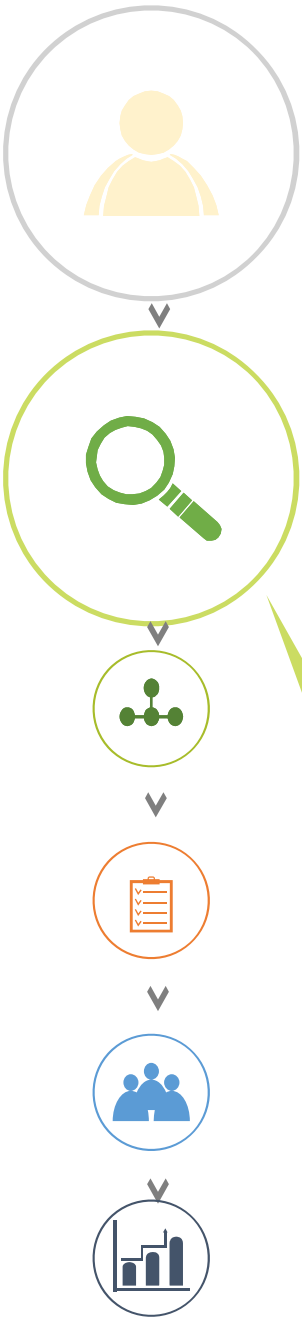

1. 핵심그룹

자발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핵심집단 구축

- 협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파악
- 이해관계자들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협약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
- 대중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필요시 협약 필요성을 공유한 이해관계자 중 핵심 참여자를 중심으로 핵심단위 확정
- 핵심단위는 협약 추진과정의 합의와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

2. 공동목표

사회협약 필요성을 공유하고, 핵심단위 간 공동 목표 논의와 확정

- 핵심단위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동목표 설정
- 대중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 해당 협약의 모든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단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과정 병행

1+2_ 핵심그룹 구축과 공동목표 설정 단계의 주안점

- 협약당사자들이 협약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는 환경조성 단계에서 핵심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어떤 이해당사자로 어떤 협약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공공부문(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경제부문(기업, 직능협회 등), 시민사회(NGO,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 등에서 각각 주체로 참여하며, 이중 적극적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핵심그룹 구축
- 핵심그룹에는 최소한 민·관·시민사회를 대표하는 3개 당사자를 포함하기를 권장

  ✓지역협약 :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지역주민단체 등

  ✓분야별 협약 : 해당분야 직역단체 및 대표적기업, 시민단체, 관할부처, 공기업 등
- 핵심그룹 구성단계에서 공동목표에 대한 개괄적 합의를 추진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만 협약이 구성될 경우, 협약이 이권단체화하거나 공공부문이 포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견제기능을 갖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함
- 분야별 협약 추진시 직역단체나 이익단체만으로 추진될 경우, 대립적 이해관계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협약의 대원칙과 거리가 있는 선언식에 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협약 구성 첫 단계인 핵심그룹 구성시 3개 부문(민/관/시민사회)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협약 구성원들이 가지는 비전, 목표 등과 상충될 경우 이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없으면 협약이행이 보장될 수 없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으므로 참여 집단의 비전, 목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자로 네트워크 구성필요

2. 청렴사회협약 추진단계별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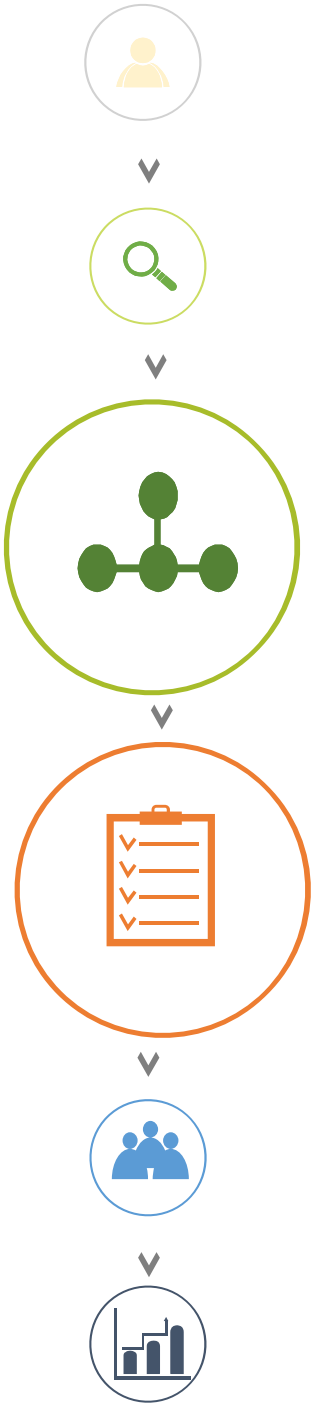

3. 협의기구

사회협약체결과 실천을 위한 조직구성

- 협약체결의 각 단계에 책임조직과 실무조직 구성
- 협약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실무조직 구성
- 토론회, 간담회 등 각 단계별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한 가벼운 형식의 활동부터 관련기관 연락본부, 협의체, 실무단 등 실천활동까지 수행하는 조직
- 실무조직의 정기성, 권한, 책임 등 마련 필요

4. 실천의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한 협약 실천의제 확정

-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관련 집단의 의견, 전문가 집단의 검토의견도 수렴
- 여론조사, 공론화를 통한 실천의제 논의과정도 필요
- 최종적으로 협약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공통 실천의제 발굴 확정

3+4_ 실무협의기구 구성과 실천의제 설정 단계의 주안점

- 이행과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토론과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약 실무협의기구 구성
- 협약의 추진여건에 따라 실무단위와 의결단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추진협의기구와 협약 체결 이후의 상설 실무단위로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음
- 초기에는 공동 목표 확인, 협약 환경 조성 등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토론회, 간담회 등 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이후 조직적 형태를 구축해 나감
- 추진실무기구, 대표자 협의기구, 실무협의기구 등 다양한 형식 가능
-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책임자들의 네트워크와 실질적 이행과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실무진들의 네트워크가 모두 필요함
  - ✓책임자들의 네트워크 역할은 공동의 목표에 맞추어 협약 당사자들의 비전과 목표를 수정
  - ✓실무진들의 네트워크 역할은 이행과제가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함
- 실천의제 마련시 각 이해당사자들의 개별적 의제를 취합하고, 실천 가능성, 장애요소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구체성 없는 선언적 의제나 이행이 불확실한 의제, 한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의제 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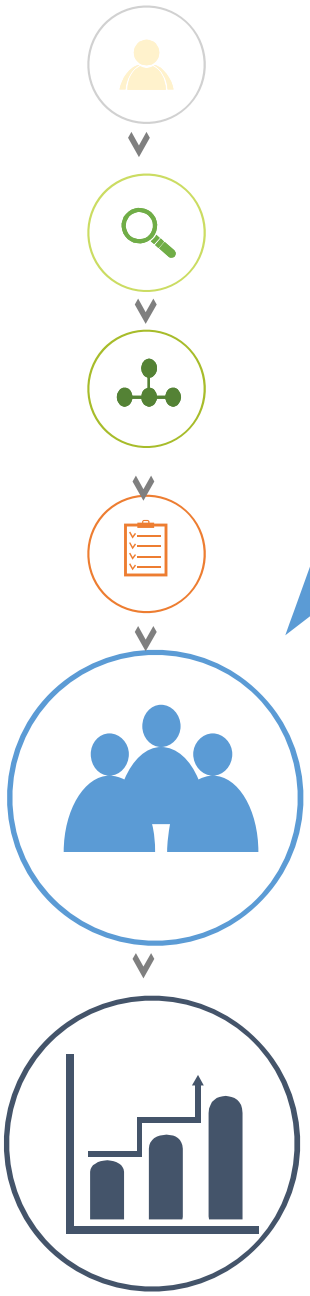

5. 협약체결

협약의 실질적 내용을 협약문에 담고, 협약구성원의 서명을 통한 실천의지 표명

- 협약체결의 핵심내용인 협약문 작성
- 협약의 목표, 이해당사자, 실천의제, 이행과 평가, 협약 운영을 위한 규정, 협약지속의 방안 등 포함
- 이해당사자 대표들 간의 서명과 협약 체결
- 협약서명식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통한 협약실천의 효과 및 실천의지 고취 필요
- 협약체결 후 협약이행을 책임지고 운영할 실무협의기구 구성

6. 이행 · 평가

협약 실천의제의 이행 · 평가와 협약확산

- 실무협의기구의 위상과 권한은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성, 책임성, 안정성을 위한 운영규칙과 재정보장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필수
- 이행평가는 협약 당사자들간 교차평가와 동료평가, 전문가 평가 등 협약 여건에 맞게 적용
- 평가결과와 성과 등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홍보
- 실천의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 실천고취방안 필요

5_ 협약문과 협약 체결 추진의 주안점

- 협약문은 협약 주체, 당사자 모두가 하는 약속의 내용과 형식이 포함됨
- 즉 협약의 목표로써 반부패 청렴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해 당사자, 실천의제, 이행평가, 협약 운영을 위한 규칙, 협약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등으로 구성
-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명시하고 운영회기, 운영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협약 운영을 위한 기금, 분담금, 회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협약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협약문의 작성은 협약당사자들의 실무진 네트워크와 책임자 네트워크가 동시에 검토하고 토론, 협의를 하는 것을 권장함
- 협약 체결식은 협약 대표자들이 협약에 서명 하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효과 및 교육적 효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협약에 참여하는 전체 구성원들의 반부패·청렴 문화 행사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및 협약 참여주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협약의 실천을 약속하고 선포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6_ 협약의 이행과 이행평가, 협약 확산의 주안점

- 협약의 이행은 협약의 당사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문을 통해 예외조항이나 강제조항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협약이행의 개선할 점과 협약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의 이행 여부와 이행수준을 객관적으로 검검하는 "협약 이행 평가" 반드시 필요함
- 이행평가는 협약의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
- 이행평가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여건에 따라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평가 등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이행평가 방법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료평가, 시민사회 평가, 전문가 평가 등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정기회의를 통해 당사자간의 이행점검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이행평가는 반기 또는 연간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 동료평가는 주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내용에 대한 확인. 방문 점검 등이 가능하며, 협약 내부의 신뢰성, 호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부문간 교차 평가 방식을 권장함
- 과제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내부 구성원들의 논의와 협의를 통한 과제의 수정, 폐기, 보완, 미이행 기관에 이행강제 등 여러 가지의 추후적 조치가 필요함
- 이러한 추후적 조치에 대한 사항 역시 이행문을 통해 문서화 할 필요가 있음
- 협약의 확산과 인식 전환을 위해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대국민 보고, 보도자료 언론 배포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권장

3.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청렴사회협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공공, 시민사회, 경제, 정치계 등 이해관계자에 따라 협약에 대한 요구와 협약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협약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한 초기 핵심구성의 역할과 후반에 참여한 구성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구분될 수 있다.

청렴사회협약 추진 절차의 기본항목, 핵심집단, 참여집단, 조력자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기본항목

단 계	핵심업무	체크리스트(기본항목)	비고
청렴 사회협약 체결 이전	핵심그룹 구축	▪ 핵심 집단 구축 : 이해당사자 발굴, 협약 참여 동의 단계, 이해당사자간 실무급 간담회 ▪ 대표 실천의제 설정 : 참여 당사자간의 아젠다 제출 및 조정 ▪ 네트워크 구축 : 대표자회의, 협약실행단위 구축, 협약체결준비	▪ 초기 핵심그룹이 주변의 이해당사자를 발굴하고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
	실천의제 설정	▪ 실천의제 설정 : 공통된 이슈를 발굴하고, 과제의 합의 및 환류 ▪ 환경조성 :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공동교육 등으로 환경 조성	▪ 협약 참여집단의 공통된 아젠다를 공유, 확산하는 것이 중요
청렴 사회협약 체결	청렴사회협약 내용	▪ 사회협약 내용 : 선언문, 과제 등 ▪ 식순 점검 :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협약 당사자 소개, 격려사, 사회협약 경과보고, 사회협약 체결식	▪ 협약 체결식이라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의 내용과 참여 폭 확대에 주목
	청렴사회협약 체결식	▪ 사회협약 체결식 : 이해당사자 대표들의 협약 서명식, 참가자 전원의 사회협약을 위한 선언문 서명	▪ 체결식에는 가급적 광범위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협약의 영향력을 높임
청렴사회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이행	▪ 협약이행 : 계획 작성, 협약실행 담당조직화 ▪ 협약 확산 : 협약 참여 확대, 협약 제도화와 구체화 방안, 범국민운동 확산 등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참여 수단 활용 ▪ 협약이행과 동시에 협약의 확산 노력
	이행평가	▪ 협약이행평가 모형에 따른 이행평가, 협약참가 집단 내부 인식조사 등을 통한 이행평가 등 수행	▪ 내부 동력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것에 주목하여 평가

핵심그룹을 위한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기본항목	핵심그룹 체크리스트	v
핵심그룹		
사회협약체결의 필요성 공유	사회협약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 진행	
사회협약구성원으로 참여	핵심그룹으로 참여여부 내부 논의	
	핵심그룹 구성원으로 참여 확정	
사회협약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참여 실무자 확정	
	추진위원회 회의 진행 또는 참석	
협약구성원의 책임자급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참여할 책임자급 선정	
	참여자의 사회협약 필요성에 대한 이해정도 확인	
공동목표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발굴	(조직내) 사회협약체결 이행으로 취하고자 하는 개별목표 논의(토론과 의견수렴과정)	
	>>반드시 조직내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	
	(조직내) 개별목표에 이해관계자와 조율 여부	
	(추진위) 개별목표 대상으로 논의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확정	확정된 공동목표 개별 조직에서 공유	
	조직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반영 여부	
협의기구		
협약 책임조직(의결단위) 구성	협약 책임조직(의결단위) 참여 여부	
협약 실무조직(집행단위) 구성	협약 실무조직(집행단위) 참여 여부	
	실천 가능한 이행과제인지 내부논의 필요	
	합의된 이행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협약 실무단 네트워크 구성 및 참여 여부	
실천의제		
실천의제 확정을 위한 논의	실천의제에 대한 조직내부의견 수렴	
	실천의제에 반영할 조직의 요구사항 정리	
	실무단 회의 참여	
	핵심그룹과 직접 관련있는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핵심그룹 내 의견수렴과정과 토론	
협약구성원의 사회협약과 이행과제에 대한 이해	핵심그룹 내 사회협약과 이행과제 등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 고취를 위한 활동(홍보, 교육, 내부간담회 등)	
실천의제별 실무조직 구성	핵심그룹 내 담당부서(담당자) 확정	

추진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 책임을 가진 직급의 참여 필수

기본항목	핵심그룹 체크리스트	v
협약문(규정)		
체결식 준비위원회 구성	체결식 준비위원회 참여담당자 확정	
사회협약 규정 확정 (협약문 구성 내용 논의)	협약의 목표 / 실천의제 / 당사자의 책무와 역할 / 실천의제의 이행과 평가, 확산 등 규정 핵심내용 검토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금, 분담금 등에 대한 규정: 핵심그룹 내부 논의 필수	
	협약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 핵심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핵심그룹 내부 논의 필수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실무기구 참여 여부 검토	
사회협약 체결식	협약내용 핵심그룹 내부에 공유, 홍보	
이행.평가/협약확산		
협약이행을 위한 위원회 / 실무단 구성	핵심그룹 내 실무팀 또는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실무협의기구 규정 제정 참여	
이행과제별 일정계획 수립 여부	실행 일정계획 수립	
	실행 일정이 핵심그룹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실무단에 의견제시	
이행평가	피평가자로서 자료 제출	
	평가자로서 역할 참여	
평가 후속조치 (제도화, 이행과제 보완)	제도화 현황 파악	
	이행과제 수정보완 필요성 파악 / 의견수렴	
협약확산	이행평가 결과, 조직내 반부패청렴정책 등에 반영	
	이해당사자 / 관련 조직 등 협약 추가 참여 검토	

협약문은 선언의 의미보다 참여 당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중요함

참여그룹을 위한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기본항목	참여그룹 체크리스트	v
참여그룹		
사회협약체결의 필요성 공유	사회협약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	
핵심그룹의 범위와 구성원 확정	참여그룹으로 참여여부 내부 논의	
	참여그룹 구성원으로 참여 확정	
사회협약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 참여여부에 따라 담당 실무진 확정	
	추진위원회 참여여부에 따라 추진위 회의 참여	
공동목표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발굴	(조직내) 참여그룹으로서 사회협약체결과 이행으로 취하고자 하는 개별목표 선정(토론과 의견수렴과정)	
	>>반드시 조직내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	
	(조직내) 이해관계자와 공동 목표 조율	
	(추진위) 개별목표 대상으로 논의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확정	확정된 공동목표를 개별 조직에서 공유	
협의기구		
협약 실무조직(집행단위) 구성	협약 실무조직 참여 여부 확정	
	실천 가능한 이행과제인지 내부논의	
	합의된 이행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협약 실무단 네트워크 참여 여부 검토	
실천의제		
실천의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	실천의제에 대한 조직내부의견 수렴	
	공동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의제에 반영할 참여그룹의 요구사항 정리	
	참여그룹과 직접 관련있는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참여그룹 내 의견수렴과정과 토론	
협약구성원의 사회협약과 이행과제에 대한 이해	참여그룹 내 사회협약과 이행과제 등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 고취를 위한 활동(홍보, 교육, 내부간담회 등)	
실천의제별 실무조직 구성	참여그룹 내 담당부서(담당자) 확정	

직능단체일 경우, 단체소속 경제부문의 대표 단위 참여 필수

기본항목	참여그룹 체크리스트	v
협약문(규정)		
체결식 준비위원회 구성	체결식 준비위원회 참여 여부 검토	
사회협약 규정 확정 (협약문 구성 내용 논의) 협약문은 선언의 의미보다 참여 당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 하고 '약속' 하는 의미가 중요함	협약의 목표/실천의제/협약당사자의 책무와 역할/실천의제 이행과 평가 확산 등에 관한 참여그룹 내부 의견 검토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금, 분담금 등에 대한 규정:참여그룹 내부 논의 필수	
	협약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참여그룹 내부 의견 검토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그룹 내부 의견 검토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실무기구 참여 여부 검토	
사회협약 체결식	협약내용 참여그룹 내부에 공유, 홍보	
이행·평가/평가확산		
협약이행을 위한 위원회/실무단 구성 여부	참여그룹 내 실무팀 또는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이행과제별 일정계획 수립	이행과제별 실행 일정계획 수립	
	실행 일정이 참여그룹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실무단에 의견제시	
이행평가 참여 및 지원	피평가자로서 자료 제출	
	평가자로서 역할 참여	
평가 후속조치 (제도화, 이행과제 보완)	제도화 현황 파악	
	이행과제 수정보완 필요성 파악 / 의견수렴	
협약확산	이행평가 결과, 조직내 반부패청렴정책 등에 반영	
	이해당사자 / 관련 조직 등 협약 추가 참여 검토	

조력자를 위한 청렴사회협약 업무 체크리스트

기본항목	조력자(Facilitator) 체크리스트	v
조력자(권익위원회)		
사회협약체결의 필요성 공유	사회협약체결의 필요성 정리 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공유	
사회협약 체결의 필요성 등 공론화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언론보도 등	
사회협약구성원 확정	핵심그룹/참여그룹 대상자 사전 논의	
	핵심그룹/참여그룹 범위 선정	
	핵심그룹/참여그룹 대상 연락	
	민.관.시민사회의 3부문 당사자 필수 참여한 구성원 확정	
사회협약 추진위원회 구성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추진위 구성	
	추진위원회 회의 주관	
협약구성원의 책임자급 네트워크 구성	책임자급 네트워크의 대상 선정	
	네트워크 구성원의 사회협약필요성에 대한 이해정도 확인	
공동목표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발굴	협약구성원들의 개별목표 취합	
공동목표 확정을 위한 토론과 합의	추진위에서 개별목표 대상으로 논의	
	개별목표를 사회협약 전체 틀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분류, 토론에 상정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확정	
협약구성원들의 공동목표 확정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고 모든 협약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 도출 필요	
협의기구		
협약 책임조직(의결단위) 구성	핵심그룹, 공동목표 확정 과정의 책임자급 네트워크 활용	
협약 실무조직(집행단위) 구성	사회협약체결 (필요시 추진단계별) 실무조직 구성	
	이행과제가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 다각적 검토	
	실질적 이행과제에 대한 합의와 실천	
	지역별, 분야별, 이행과제별 실무단의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는 추후 이행평가 단계에서 동료평가 단위가 됨	
	협의기구(책임조직/실무조직)의 정례성, 권한과 책임 범위 확정	
실천의제		
실천의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	실무단의 정기성 여부, 권한과 책임 확정	
	핵심그룹의 요구사항 파악	
	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단 회의개최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피드백 접수	
	전문가집단의 검토의견 수렴	
	여론조사, 공청회 필요시 실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인지 논의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	
협약구성원의 사회협약과 이행과제에 대한 이해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의 사회협약과 이행과제에 대한 이해수준 확인	
실천의제별 실무조직 구성	(필요시) 사회협약실천을 위한 더 작은 단위의 실천의제별 실무조직 구성	

추진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 책임을 가진 직급의 참여 필수

필요시 난상토론도 가능하며, 단발성 토론이 아니라 협약구성원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 도출 필요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기본항목	조력자(Facilitator) 체크리스트	v
협약문(규정)		
체결식 준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준비위원회 역할 수행 가능	
	필요시) 별도 준비위원회 구성	
사회협약 규정 확정	협약의 목표, 실천의제	
(협약문 구성 내용 논의)	협약체결의 당사자(핵심/참여그룹)와 책무/역할	
	실천의제의 이행과 평가, 확산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금, 분담금 등에 대한 규정 여부	
	협약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여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확정과 동의 여부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여부	
	협약운영을 위한 규칙, 협약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	
사회협약문 확정	협약구성원 모두가 약속하는 내용과 형식	
	협약구성원의 실무/책임 조직 모두가 검토하고 토론, 협의	
사회협약 체결식	체결식 참여자 확인	
	식순점검, 체결식퍼포먼스 확인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등 언론홍보	
	체결식 후속 업무(협약문, 선언문 등 협약참여자 송부)	
이행.평가		
협약이행을 위한	필요시) 이행과제별 실무단 구성	
(위원회/실무단) 구성 여부	운영을 위한 회기, 운영원칙 제정	
이행과제별 일정계획 수립 여부	이행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이행과제별 실행여부/실행정도 확인	이행과제별 실행여부/추진정도 점검	
	실행여부, 실행정도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	
이행평가체계 협의 및 확정	평가주기, 평가방법 확정	
	이행평가 지원	
평가 후속조치(제도화, 이행과제 보완)	이행평가결과 홍보: 대국민보고대회, 언론홍보 등	
	평가 후속조치(제도화, 이행과제 보완) 여부	
	제도화 현황 점검	
	평가결과를 이행과제에 적용하여 기존 과제 수정 보완	
협약확산	이행평가 결과 언론홍보	
	반부패정책 반영 여부 검토	
	협약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검토/의견수렴	

협약문은 선언의 의미보다 참여 당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 ' 하고 '약속' 하는 의미가 중요함

4. 협약문의 구성

분야별 협약 예시

전문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정부와 ○○분야 업계가 함께 "○○분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목적 / 정의 / 협약체결의 당사자 / 협약체결당사자의 책무

제2장 공공부문

○○ 부의 역할 /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 공직자 윤리 강화 /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 청렴사업자에 대한 우대

제3장 ○○부문

○○관련 단체의 역할 / 사업자의 윤리경영 / 사회적 책임 / 청렴사회협약 참여 헌장의 제정

제4장 ○○분야 청렴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칭)

청렴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설치 / 협의회의 의무 / 협의회의 구성

제5장 부칙

협약의 가입 / 발효시기 / 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 추가가입 등 확산을 위한 노력

지역별 협약 예시

전문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제2장 공공부문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 공직자 윤리 강화 / 청렴사회협약 지원

제3장 지방의회부문

청렴한 지방의회를 위한 노력 / 지방의원 윤리 / 직권남용 및 직무관련 금품 취득 금지 / 협약의 입법화 추진

제4장 지역경제 부문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 윤리경영 강화 /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사회적 책임

제5장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참여헌장 제정과 실천 / 청렴교육 / 시민참여 촉진

제6장 언론부문

공정 투명한 언론보도 / 윤리보도 강화 / 책임성 있는 언론의 역할

제7장 협약이행

청렴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 협약의 보완 / 협약이행의 평가

제8장 부칙

협약의 가입 / 발효시기 / 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memo

IV. 협약의 다양한 추진사례

1. 분야별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2.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3. 청렴사회협약 사례 및 협약문 예시

1. 분야별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분야별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과 의의

- 부패는 업무 밀착도가 높은 동종분야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동종분야의 이해당사자가 해당분야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분야별 협약을 통한 부패통제 기대효과가 높음
- 해당분야의 부패유형과 사례를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비협조적일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직접적 요구를 조율하는 협약추진 과정이 바로 해당 분야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임
- 정부(공공), 경제(민간), 시민사회, 정치(의회 및 정당)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한 대단위 협약체결이 청렴사회협약의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문별 중앙협약을 추진해가는 과정의 기초가 바로 분야별 협약임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당사자

- 공공부문(해당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 및 정부기관), 직능단체 및 직역단체, 해당분야 대표 기업 및 공기업, 관련 이익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분야별 청렴사회협약의 여러 사례

- 방위사업분야 청렴사회협약 : 부패의 규모와 폐해가 크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방위사업분야의 부패통제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약으로 한국방위사업진흥회, 방위사업청, 한국투명성기구 등이 핵심그룹으로 참여
- 사회복지분야 청렴사회협약 :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복지부정, 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수령 등 복지분야 부패통제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청렴성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 가능
- 그외 건설분야, 교육분야, 산림분야, 금융분야, R&D분야, 보건의료분야, 체육분야, 중소벤쳐기업분야, 가맹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청렴사회협약 추진이 가능
- 직능단체, 이익단체 등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협약 추진 가능

2.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과 의의

- 지방자치의 발달과 함께 생활현장에서의 사회갈등 조정기구의 수요와 최근 사회갈등의 유형이 지역단위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협약의 중요성이 높아짐
- 지역사회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문제해결 역량과 파트너쉽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직접민주주의의 촉매제 역할
- 특히 지역사회 내 민관유착, 지역 유력인사들의 이권관련 불법 개입 등 지역토착비리의 척결을 위한 필요성 증대

☞ 지역 청렴사회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청렴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구체화 가능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당사자

- 공공부문, 지방의회 부문, 지역경제부문, 시민사회, 언론부문 등 5개 부문 참여 고려
- 예시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회, 지역 공기업, 지역 경제인 단체, 지역시민단체, 지역언론, 학부모단체 등 각종 주민단체 등 이 당사자로 참여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주요 목표

- 지역사회 내 민관유착에 따른 의사결정의 왜곡, 부당한 예산집행 차단, 지역 유력인사들의 이권관련 불법 개입 등 지역 부패의 통제와 청렴교육, 인식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

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제도화

- 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조례 제정 검토

2018년 추진사례 :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약

추진경과

날짜	주요 논의 사항
2018. 6. 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청렴실천 실무협의회 개최
	청렴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약 추진 청렴 실천 실무협의회 차원의 청렴이행 안건 도출
2018. 6. 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직능단체 청렴실천 실무협의회 개최
	청렴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산하기관 협의회와 통합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약 추진-5개기관 시범참여, 추후 확대추진 청렴 실천 실무협의회 차원의 청렴이행 안건 도출-취업제한 규정 마련 등
2018. 9. 28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약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외 38개 기관 참여
2018. 10. ~	**세부 추진 계획 마련 및 운영**
	참여기관별로 협약 이후 세부 추진 계획 마련 협약실천을 위한 청렴실천협의회 정기 모임 실시(반기별) 협약실천 현황 점검(분기별)

2018년 추진사례 :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약

중소기업 분야 협약 참여 기관 (38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33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중소기업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진흥공단	㈜SBC인증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한국산학연합회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협약에 협의회(대전센터) 우선 참여)
	직능단체 (5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2018년 추진사례 :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약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문 (2018. 9. 28)

전문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주역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국가발전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성희롱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국민들로부터 부패취약분야로 인식되는 등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부패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소기업 분야의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우리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은 중소기업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소속 산하기관 등을 말한다.
2.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중소기업 직능단체를 말한다.
3.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반부패 노력과 함께 청렴활동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6조(부패방지 체제 개선) 공공부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3.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4.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5.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6. 갑질, 채용비리, 성희롱 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청렴도 제고) 공공부문은 금품.접대 안 받기, 청탁 안 하고 안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노력한다.

1.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자의 부패척결에 노력한다.
2. 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8조(공공부문 직원 윤리 강화)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도록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이권 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회피 또는 제척하도록 한다.
4. 기타 기관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청렴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한다.

제9조(청렴 교육 강화) 공공부문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10조(청렴실천 협약 지원) 중기부는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우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

제3장 민간부문

제11조(민간부문의 역할)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은 단체를 대표하여 금품제공, 정경유착, 불투명한 단체 경영,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단체들이 청렴한 윤리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12조(윤리 경영) 민간부문은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위법부당한 정치적 기부행위, 이해충돌 행위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2.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3. 갑질, 채용비리, 성희롱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보호.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중소기업 분야 청렴협약 실천협의회

제13조(청렴협약 실천협의회의 설치) 중소기업 분야 청렴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분야 청렴협약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4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협약의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이행의 점검.확산 등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제15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중기부 감사관, 단체의 상임부단체장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부 담당자, 단체의 상임임원 또는 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부칙

제16조(발효시기)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17조(추가가입 등)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서 명 부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28일

2006년 :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경과

일시(2006년)	주요 논의 사항
4. 19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 합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8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이 '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장단 구성, 5월 중으로 협약 의제 설정 및 협약문 작성을 위한 실무반 구성 활동 결의 ※보건복지부 감사팀장 참석
5. 16 ~ 7. 5	1~4차 실무협의회의
	학계교수, 사회복지관련단체 확대 참여여부 논의, 협약체결식 일정 조정 실무협의회 구성·확대 논의, 주요의제 논의, 협약 체결을 위한 추진 로드맵, 의제심화 토론회 논의
8. 17	사회복지분야 의제심화를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및 서비스 질 개선/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8. 23/9. 8	5~6차 실무협의회의
	의제심화 토론회 내용 정리, 협약문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문 소위원회안 논의, 협약체결식 행사 일시, 장소 확정 사회복지분야 실천협의회 구성 논의
9. 19	사회복지분야 대표자회의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협약문 결정, 실천협의회 의장단체 및 실행위원 선정
10. 17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참여 기관: 사회복지분야 14개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보건복지부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2006.10.17)

협약문

전문

우리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복지제도를 정착해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재정투자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고, 복지수준이 국가발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하나의 이웃이 된 지구촌에서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된 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인의 복지증진 노력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긴요하다.

이에 사회복지건설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를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복지를 향상하는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사회복지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관련단체"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 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등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공공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시설이용자"란 사회복지시설?관련단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자정노력과 함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 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6조(부패방지체제 개선) 공공부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시스템을 운영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3.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4.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5.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청렴도 제고) 공공부문은 금품·접대 안 받기, 청탁 안 하고 안 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노력한다.

제8조(공공부문 직원 윤리 강화)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 제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제9조(투명성 교육 강화) 공공부문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 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명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지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투명사회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제11조(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1.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설운영비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회계의 전산화 확대에 힘써 책임있는 운영체제를 확립한다.
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
3. 공공부문과 사회복지관련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법령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규정위반을 방지한다.

제12조(기능보강사업비 적정집행)

1. 기능보강사업 계약 시“국가계약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
2. 합리적 낙찰제 도입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며 부정한 금품은 반환·처리한다.
4.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련법규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 시 쌍방간 청렴계약서약을 체결한다.

제13조(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결산서를 일반에 공고한다.
3. 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의결 결과를 공개한다.
4. 이사회 임원 선임 시 비리사실 여부, 자격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14조(후원금 및 입소비용 관리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후원금 및 입소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

1. 후원금은 입·출금 관리통장에 의거 출금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이행한다.
2.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3.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4. 결연 후원금의 경우 수혜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관리한다.
5. 시설 이용자 입소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15조(당사자 역할) 정부 및 사회복지관련단체 등 협약 당사자는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한다.

1. 시설 직원들에게 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
2.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노력
3. 비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노력

제4장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개선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제16조(이용자 권익보호) 공공부문과 사회복지관련단체,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입·퇴소는 시설관련법령과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2.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관련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종교생활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5.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을 설치한다.
6.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및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설 내에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운영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단위에 공공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옴부즈만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9. 인권침해 및 유린사례의 지역사회 공표 등을 통해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7조(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제18조(직원 처우개선) 공공부문과 사회복지관련단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호봉 산정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의 근무경력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3. 시설 종사자와의 고용계약 시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9조(투명한 인사정책 확립)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채용은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기준 등 채용관련 사항을 일정기간 동안 공지한다.

제20조(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전문성 제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훈련규칙"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제도화에 노력한다.

제21조(사회복지 조사 및 연구사업 활성화) 중장기적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사회복지현장의 의견개진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조사·연구·교육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사회공헌활동 촉진

제22조(사회공헌활동의 목표) 사회복지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은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복지의식을 심어주고, 국민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호의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갖고 복지활동에 참여케 하는데 목표가 있다.

제23조(주민복지의식 제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실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 하에 주민복지교육 등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제24조(청소년 인식 및 봉사활동의 제고) 지역의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견학,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사회봉사단 운영) 사회복지관련 단체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심의 사회봉사단을 운영하여, 헌혈 등 국민건강증진 활동, 재해구호, 국제원조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제6장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의 윤리경영 강화

제26조(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사회복지관련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은 자발적인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7장 협약이행과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제27조(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협의회는 사회복지분야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2. 협의회 의장은 호선 협의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1년으로 한다.
3. 협의회 산하에 업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4.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협약이행과 관련한 점검·평가·확산 및 갱신 등의 세부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한다.
3. 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4.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29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의 관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의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4대부문 간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의 추가협약이다.
2.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5년 4월 7일 결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투명사회실천을 위한 참여선언)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참여선언문"을 제정하여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부칙

제31조(발효시기)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2조(추가가입 등)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사회복지단체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서 명 부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17일

2005년 : 대구투명사회협약

참여기관

부문별	소속 및 직위	이름
공공부문 (5명)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교육감	신상철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장	이신학
	대구경북연구원장	홍 철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상	이중근
지방의회 (2명)	대구시의회 부의장	박성태
	대구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한기열
경제부문 (12명)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노희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기
	중기협 대구경북지회장	남명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회장	안도상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도재덕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권오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정달
	㈜대구은행장	이화언
	에스엘㈜ 회장	이충곤
	화성산업㈜ 회장	이인중
	㈜대구백화점 대표이사	구정모
	㈜금복주 대표이사	김동구
시민사회 (11명)	불교(동화사 주지스님)	지 성
	천주교(범어성단 주임신부)	원유술
	대구흥사단 회장	이창기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전영평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	류승원
	대구장애인연맹 공동대표	김혜숙
	대구YWCA 사무총장	윤귀분
	여성단체협의회장	문신자
	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정석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김경조
	한국예총 대구연합회 부회장	서종달

대구투명사회협약(2005.9.27)

협약문

전문

이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정부수립이후 단기간에 경제규모 세계 11위, 외환보유고 세계4위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자본주의 병폐가 생겨나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면서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가치관의 혼란, 사회갈등 유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아 왔으며, 우리 대구가 전국 3대 도시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 단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가 지난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 국제연합(UN)의 반부패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반부패 활동을 시작하는 등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우리 대구가 지속적인 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았다.

오늘 우리는 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지역사회 구성주체들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부패문화 등 우리 의식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과 주변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패문화를 일소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과 선진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협약에 참가하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은 대구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구시 출자·출연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 기관·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은 대구의 광역 및 기초의회를 말한다.
3) 경제부문은 대구지역에서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 부문은 대구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②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 기업, 단체 등의 대표자 및 구성원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 단체, 지방의회, 기업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4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의 부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창구역할 등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과 각 부문의 반부패 관련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 등 교육계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되, 윤리경영을 확립한다.
④ 공직유관기관(연구소 등)은 자체 반부패 노력과 함께 지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부패방지체제 개선)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가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간다.
②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보완하고 감사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 각종 반부패 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되,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제6조(제도개선 등) 참여기관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의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②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③ 불합리한 행정과정상 관행, 행정규제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한다.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인사와 경영, 운영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⑤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⑥ 명예감사관 활성화 등 감사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7조(공직자 윤리 강화) 참여기관 소속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시책을 시행한다.
①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한 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공직자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한다.
④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8조(투명성 교육강화)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공공부문의 투명화 촉진 및 반부패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직장 등에서 투명성 교육을 활성화 한다.
②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반부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교육청은 건전한 교육풍토 정착을 위하여 아래 각항에 대해 노력한다.
①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행동윤리 형성에 노력한다.
② 물품구매 등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③ 학부모로부터 촌지, 기부금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한다.
④ 엄정한 성적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사행정을 하도록 한다.
⑤ 직장교육 활성화를 통해 반부패 윤리의식을 강화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실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지방의회부문

제11조(투명한 지방정치 실현 노력)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대결적 정쟁을 지양하며,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저비용.고효율의 투명한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지방의원 윤리) 지방의원은 깨끗하고 건전한 지방정치풍토 조성과 의원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노력을 다한다.
①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윤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의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직권남용 및 직무관련금품 취득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관련 지방의정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제14조(협약의 입법화 추진) 지방의회는 본 협약실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경제부문

제15조(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경제부문은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16조(윤리경영 강화) 경제부문은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문제를 포함시킨다.
②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한다.
③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④ 기업은 윤리경영 실천 집중 업종을 지정하여 실천에 힘쓴다.
⑤ 투명한 상거래 정착 및 하도급 비리 등 기업부문 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⑥ 기업의 윤리강령을 관련업체에도 주지시키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
⑦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업경영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17조(회계 투명성 제고) 회계의 투명성에 책임을 강화한다.
① 감사위원회 전문성 · 중립성 · 독립성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한다.
②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
③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여 경영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④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제18조(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19조(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

제5장 시민사회부문

제20조(시민사회의 역할) 지역사회는 대구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내의 부당한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의 극복과 사회전반의 투명한 선진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공공부문 등 각 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부패문화 일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민사회 스스로 부단한 자정노력과 거듭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대구시민참여헌장의 제정과 실천) 시민사회는 투명한 사회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반부패 실천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투명한 대구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이하 '시민참여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한다.
② 시민참여헌장에 입각한 반부패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22조(투명성 교육 및 홍보강화) 시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깨어있는 신고정신, 적극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명성교육 활성화 및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제23조(시민참여 촉진) 부패감시와 투명성 제고활동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입법촉구 활동에 주력한다.
① 부패방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및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② 시민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 및 시민참여 활동을 강화한다.

제6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협약이행

제24조(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협약내용의 점검 · 평가 · 확산 및 갱신을 기본적 역할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며, 운영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특히, 공공부문, 경제부문) 지원 및 각종 자료제공 등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25조(협약 서명운동 등 적극 참여) 협약 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들에게 협약과 시민참여헌장의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다한다.

제26조(협약 추가추진) 협의회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세부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한다.

제27조(협약의 보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 체결 후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협약을 수정 보완한다.

제28조(협약이행의 평가) 협의회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각 부문의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부칙

제29조(협약 가입) 협약은 2005년 9월 27일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대표들의 조인과 동시에 지역내 다른 세부분야에도 가입이 개방된다.

제30조(발효 시기) 협약은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4대 부문의 대표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1조(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① 공공부문은 협약에서 약정한 정책의 도입 및 제도개선,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며, 대구광역시가 창구역할을 한다.
② 지방의회부문은 협약사항을 적극 실천하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등 논의시에 적극 협력한다.
③ 경제부문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다하며, 대구상공회의소가 창구역할을 한다.
④ 시민사회는 협약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추가협약 및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다하며, 부패방지 대구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회)가 창구역할을 한다.

서 명 부

우리는 대구사회를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공부문,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지방의회,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구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17일

투명한 대구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우리 대구시민은 지난날 국난과 불의에 저항하여 한때는 의병으로 때로는 민주화 열사로 목숨마저 내놓았던 올곧음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왔으며, 오늘날은 온 시민이 합심하여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통과 신성장 동력이 어우러진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문화, 정치 및 지식정보산업의 허브도시로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밝고 희망찬 미래의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데 부정과 부패는 걸림돌로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시민은 작게는 촌지에서 크게는 사회구조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을 뿌리 뽑기 위해 어떠한 압력이나 도전에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구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사항을 솔선하여 적극 실천할 것이다.

1.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부정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우리 대구지역을 투명하게 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이다.

1. 우리 모두는 작은 부정과 부패가 지역경제의 불황과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음을 눈여겨 봐왔다.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고주의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고, 관행적인 촌지 혹은 떡값은 나부터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1. 우리 모두는 "스스로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병아리가 된다." 는 섭리와 같이 공익을 위하여 내부고발과 공익신고에 내가 먼저 앞장서 실천하겠으며, 타인의 각종 정보를 악용하여 이익을 채우는 행동은 스스로 하지 않겠다.

1. 우리 모두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 "세계 속의 우뚝 선 대구" 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청렴교육을 생활화한다.

1. 우리 모두는 한술 밥에 배가 부르지 않음을 안다. 깨끗한 대구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관·단체와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시민참여헌장을 적극 실천하겠다.

1. 우리 모두는 대구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대구의 얼을 지키며, 단결된 대구인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에, 우리 모두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구지역사회 건설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으로 부끄럽지 않은 "투명한 대구" 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서 명 부

3. 청렴사회협약 사례 및 협약문 예시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는 2005년 9월 27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부문 최초의 투명사회협약 조례 제정
(2005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6일 본회의 통과)

(제정) 2006-01-10 조례 제 3753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 43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말한다.
3.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이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구투명사회협약"이라 함은 대구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을 대표하여 30명이 2005년 9월 27일 서명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시는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대구협약"이라 한다) 실천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협약 체결당사자들과 합의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창구역할을 한다.

제4조(협의회 지원) ①협의회의 원활한 설치 운영, 대구협약의 이행 및 보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회 운영지원
2. 대구협약의 평가·공개를 위한 공공부문 분담금 지원
3. 대구협약의 평가 및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4. 공공부문의 간사기관 역할 및 모든 부문의 창구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공공부문내 각 참여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시장은 공공부문의 대구협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시 및 구·군,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공사·공단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군수, 교육감, 대구경북연구원장 및 공사·공단 대표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내용) 실천계획에는 대구협약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감사계획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개정 2012.3.30 조례 제4334호)
3.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 확대
4.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인사 운영
5.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자정노력
6. 명예감사관 활성화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4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문헌

김순양 (1999)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215-236

심삼용 (2007)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7-3

정상호 (2007) 지역사회협약의 이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시론, 동향과전망 71

임상훈 (2006) 각국의 사회적 협의기구1: 네덜란드의 사회협약과 사회적 협의기구, 국제노동브리프4-3

임상훈 (2006) 각국의 사회적 협의기구2: 브라질의 사회협약 체제, 국제노동브리프4-3

신동명 (2006) 각국의 사회적 협의기구5: 아일랜드 사회협약 체제, 국제노동브리프4-3

이철승 (2018) 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전략-트라이레마와 유연화 · 이중화의 극복, 비판사회정책 68

임상훈 (2002) 한국의 사회협약-노사정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삼자교섭 전략, 한국인사조직학회

엘리너 오스트롬, Governing the Commons: 윤홍근 외 1명(역) :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유근춘, 최연혁, 정병기, 김종법, 이근호, 국중호, 김선희 (2014)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 사회협약 창출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321-338

이명석 (2006) 제도, 공유재, 그리고 거버넌스, 행정논총 제44권 제2호 247-275

임상훈, 루치오 바카로 (2006) 약자들의 사회협약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 사례 비교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라영재 (2008) 한국 정부에서 정책협의의 시도와 전망 – 노사정사회협약, 투명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 사례비교 –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제3호 33-65

황지태, 강태경, 이정주 (2017)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 형사정책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Jon Pierre; B. Guy Peters (2000)《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St. Martin's Press. ISBN 978-0-312-23176-7.

국민권익위원회 (2017) 청렴 클러스터 정책 워크숍

관계기관합동 (2018)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투명사회협약 백서 (2005~2008)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memo

청렴사회협약 길잡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제 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발행일 2018년 11월 29일 (1쇄)

2019년 3월 21일 (2쇄)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우)30102

Tel. 044-200-7163 Fax. 044-200-7917

[비매품]

SIT 반부패시스템연구소 Seoul Institute for Transparency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RANSPARENT SOCIETY PACT GUIDE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Tel. 044-200-7163 Fax. 044-200-791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